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리사 외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금지〉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9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1
1. 감정 관련 법률 규정	11
2. 서류 작성 관련 다른 자격사법 입법례	13
3. 해외 입법례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의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은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체계의 미비함이 있음.

이에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즉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규율하며(안 제21조제2항제1호 신설),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등)를 작성하며 변리업을 수행하는 것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¹⁾으로 ‘산업재산권²⁾에 관한 법률상 감정’ 업무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생략)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u>
<신설>	1. <u>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감정</u>
<신설>	2. <u>제2조의 대리 업무에 관련된 서류(또는 문서)의 작성</u>

1)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경우를 말함.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말함.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3), 이 중 변리사가 아닌 자(이하 “비변리사”)가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21조 및 제24조4).

1. 변리사 아닌 자의 감정 업무 금지(안 제21조제2항제1호)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감정’(이하 “법률상 감정”⁵⁾)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으로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변리사 아닌 자(이하 “비변리사”)가 수행할 경우 중소기업 등 법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⁶⁾

현행 「변리사법」은 비변리사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 관련 대리 업무만을 금지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

3)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4)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산업재산권 관련 감정 행위는 ‘등록가능성·무효가능성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 범위에 관한 감정’을 뜻하는 ‘법률상 감정’과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중 ‘법률적 감정’에 한함.

6) 제안이유: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업재산권에 대한 법률상 감정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리사법」이 아닌 무자격자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⁷⁾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⁸⁾

이에 개정안은 비변리사의 ‘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률상 감정 업무’도 명확히 금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업무영역에 관한 법률서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변리사의 감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산업재산권 감정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감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변호사법」상 ‘감정’의 의미를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해석한 판례가 있고

7)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8) 최근 변리사·변호사가 아닌 특허정보업체가 의뢰인에게 산업재산권의 등록·무효 및 침해가능성에 관하여 검토 결과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변호사·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해 법률적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서울중앙지법 2024.10.18. 선고, 2023노277).

(1995.2.14. 선고 93도3453 판결), 개정안은 금지하는 감정의 범위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감정”으로 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결정문(2012.8.23 선고, 2010헌마740)⁹⁾상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률상 감정이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허청·대한변리사회는 개정안은 감정의 범위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새로운 금지와 처벌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해 금지되던 무자격자의 법률사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변리사법」에도 명시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감정, 감정평가, 기술평가는 계속 허용되는 등 기

9) 현재 2010헌마740 결정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변리사법 제8조)의 입법취지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같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얹혀있는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적정한 심리와 신속한 진행 및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존과 업무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대한 처벌은 해당 자격사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¹⁰⁾

법무부는 개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특허권 등에 대한 법률상 감정 행위는 이미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여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동일한 내용을 「변리사법」에 중복입법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없이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변리사가 아닌 자에 대한 대리업무 금지 외에 특허 등에 관한 감정사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리사 외에 다른 전문직역도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비변리사의 감정, 자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발의되었으나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10)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산권의 법률사건과 관련된 감정 및 법률상담 등의 행위는 허용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산업재산권 감정평가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업무도 허용될 것으로 보임(관련 규정 : ‘참고자료 1’ 참조).

11)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안(2020.11.26.),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안(2021.7.28.)

[표 2] 개정안에 대한 주요 찬반의견

찬성의견(대한변리사회)	반대의견(변호사협회 등)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감정은 법률적 지식에 기한 판단임	○비변리사의 금지업무가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감정에 국한되는지 불분명함(변호사협회)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해 금지되는 것을 「변리사법」에도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음	○변리사가 감정사무를 독점함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어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고, ‘감정’은 독점사무에서 배제한 취지에 반할 수 있음(법무부)
○IP서비스기업이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됨	○IP서비스기업과 민간전문기관의 위축이 우려되고,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반함(변호사협회)
○법적근거 없는 무자격자 규제가 입법 취지이고, 타법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기존과 업무상 충돌은 없음	

2. 비변리사의 서류작성 업무 금지(안 제21조제2항제1호)

개정안은 비변리사가 대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서류(문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변리사는 제21조¹²⁾에서 비변리사의 특허등에 관한 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제24¹³⁾)하고 있으므로 비변리사가 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변리사가 대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서류 작성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변리사법」 제21조¹⁴⁾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 업무에 이미 그 수행에 필요한 출원서 등 서류 작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법률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는 한편,

12)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13) 「변리사법」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출원·심판 절차의 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등)의 작성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무자격자가 작성·제공한 서류를 형식상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리와의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¹⁵⁾ 개정안과 같이 비변리사의 금지 업무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변호사법」, 「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사법¹⁶⁾ 및 해외 입법례(일본)¹⁷⁾의 경우에도 무자격자의 대리 업무 외에 서류(문서) 작성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8

15)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형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대리에 포함됨(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16)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의 경우 업무에 서류 작성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특히 「변호사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구조로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제3조)하면서 비변호사의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과 함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금지(제109조)하고 있음.

17) 일본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하게 서류 작성 업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참고자료 3 참조).

참고 1

감정 관련 법률 규정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참고 2

서류 작성 관련 다른 자격사법 입법례

구분	규정내용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규정내용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u>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공인 노무 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u>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u>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u>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u>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u>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관세 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税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구분	규정내용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 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u>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u> 2. <u>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u> 3. <u>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u>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분	규정내용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u>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u>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문서, 도화(圖畵),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정 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일본 변호사법, 변리사법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72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의 취급 등 금지)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자는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소송사건, 비송사건 및 심사청구 재조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또는 화해,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리사법

제4조(업무) ① 변리사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출원에 관한 특허청에서의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경제산업성에 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이러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제75조(변리사 또는 특허업무법인이 아닌 자의 업무제한) 변리사 또는 특허업무법인이 아닌 자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 또는 국제출원, 의장과 관련된 국제등록출원 또는 상표와 관련된 국제등록출원에 관한 특허청에서의 절차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재정에 관한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절차에 대한 대리(특허료의 납부 절차에 관한 대리, 특허원부에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대리, 기타 정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감정이나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나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